

금융플랫폼은 특별한가

-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책방향

< Executive Summary >

- **금융플랫폼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후생은 제고되나 플랫폼 독점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정책적 이슈가 제기**
 - 금융플랫폼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을 심화시켜 소비자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
 - 그러나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용자 활동을 확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요 산업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부상하면서 독과점 이슈가 발생
 - 플랫폼은 네트워크가 있는 동태적 시장이어서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경쟁법으로는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EU, 영국, 중국 및 국내에서도 대형플랫폼과 금지 행위를 사전에 정의하는 사전규제를 도입하거나 논의 중
 - 독과점 이슈 외에 금융플랫폼은 ①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대형화로 나타나는 ② 금융안정성 이슈 등 금융플랫폼만 가지는 특유의 속성도 존재
- **주요국에서는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 정책은 일부 보완이 필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및 금융안정성 관련 제도>

		해외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	동일기능-동일리스크 동일규제	(미국, 영국 등)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적용하여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일본) 중장기적으로 업종별 기능체계에서 기능별 규제체제로 전환하여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실현	- 금융플랫폼을 규율하는 전담법 개정이 지연되어 금융플랫폼 정의, 영업행위규제, 법적책임 등의 규정이 미흡 - 금소법상 금융플랫폼은 금융회사가 아니며 제공하는 서비스도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금융플랫폼 중개	(미국, 영국 등) 플랫폼이 중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라이선스 취득 요구 (일본) 모든 금융상품 중개가 가능한 금융상품 서비스 중개업 도입, 중개에 대한 법적책임 및 의무 대폭 강화	- 플랫폼 중개에 대해서는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 등록이 요구되며 6대 판매규제 등이 적용 - 예금, 보험, 펀드의 플랫폼 중개는 샌드박스 형태로 임시 운영되고 있는 형태여서 제도의 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움
금융안정성 제고	플랫폼의 펀딩상품에 대한 규제	(미국, 일본, 중국 등) 펀딩상품 대형화로 인한 금융안정성 훼손 방지를 위해 외부 예치 의무화 (싱가포르) 대형화된 지급결제플랫폼은 상위 라이선스 취득을 강제화하여 은행 수준 규제적용 (중국) 플랫폼 결제청산 전담기구인 왕롄을 설립하여 은행권과의 직접 연결을 차단	선불충전금 외부예치를 법제화하였으나 전액이 아닌 50%이상으로만 설정, 내부에 남아있는 금액은 여전히 이용자보호에 취약
	복합리스크 관리	(유럽, 일본 등) 금융-비금융간 복합리스크 관리를 위해 복합금융그룹 규제 도입, 특히 일본은 대형 금융플랫폼에게 복합금융그룹 규제 적용 (중국) 중국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기업은 금융지주 설립을 의무화하여 금융-비금융간 연계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함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존재, 금융복합 기업집단으로 설정 시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 - 다만 선정기준이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어있어 금융플랫폼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함

■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으로 편입, 플랫폼 중개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가 요구

- 금융플랫폼의 입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플랫폼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플랫폼(전자금융업자)도 금융회사로, 금융플랫폼 제공서비스 (선불지급수단 등)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여 금융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시 금융회사 서비스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 할 필요
- 일본과 같은 통합중개라이센스를 도입하여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하여 소비자 이익을 위해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상품을 중개하는 방법을 고려
- 디지털 전환, 빅블러 현상으로 신규 비즈니스가 출몰하나 현 업권별 규제체계에서는 규제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규제 공백을 최소화

■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충전금의 적립금 지급 금지 및 외부 예치 전액 의무화, 복합금융기업집단 선정기준 현실화,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

- 충전금이 예금과 경쟁하여 은행의 조달안정성이 감소시키지 않도록 충전금에 대한 적립금 부여를 금지하고, 선불충전금 전액을 외부예치를 의무화하여 플랫폼의 지급불능리스크를 최소화
- 또한 복합금융기업집단 선정 기준을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중개·결제 등 flow 지표를 추가하여 플랫폼의 금융-비금융 연계리스크를 관리
- 마지막으로 BIS에서 제안하고 있는 플랫폼그룹의 통합접근법 등 플랫폼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도입할 필요
 - BIS는 플랫폼의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비금융 전체를 포괄하는 규제체계를 모색하여 플랫폼 전체에 규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상호의존성을 통제할 것을 권고
 - 또한 플랫폼 하 금융활동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산하에 배치하고, 강화된 규제요건에 따라 금융활동을 규제

연구위원 김혜미 hmikim@hanafn.com

Key Words : 금융플랫폼정책,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안정성

I. 플랫폼 발달로 나타나는 주요 정책이슈

- 온라인플랫폼은 주력사업인 비금융업을 영위하고 부가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후생을 제고한다는 장점
 - 플랫폼은 금융과 비금융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슈퍼앱을 구축하고 플랫폼 생태계를 통합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
 - 플랫폼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금융플랫폼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적극적인 디지털 정책에 힘입어 최근 급격히 성장
 - 금융플랫폼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을 심화시켜 금융소비자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 금융플랫폼은 플랫폼 속성상 독점적 성격을 지니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에서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를 도입하거나 논의가 진행 중
 - 플랫폼은 데이터(Data) 기반의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고 이용자의 활동(Activity)을 확대하는 DNA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요 산업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부상하며 독점성 이슈가 나타남
 -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동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경쟁법으로는 플랫폼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존재

표1 | 주요국의 플랫폼 독점 관련 규제 추진 현황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주관	연방거래위원회(FTC)	EU 집행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규제 정책	반독점 개혁 법안 (5개 법안 패키지법) *23년 회기내 미통과로 폐기	- 디지털서비스법(DSA) - 디지털시장법(DMA)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 거래 투명화법(新디지털법)	반독점 규제 지침(개정)
세부 내용	- 디지털 시장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잠재적 경쟁업체 인수,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경쟁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대한 불공정 경쟁 행위 등을 금지하는 사전 규제 - 법 위반시, 법원이 매각(구조적 분할)까지 고려	- DSA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과 의무 등을 규정 - DMA는 디지털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게이트키퍼 (gatekeeper)의 불공정 관행과 경합성 제한 관행 등을 사전 규제	- 매출액 일정 기준 이상인 특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21.4월, B2C 종합 온라인 몰과 B2C 앱스토어를 지정 22.8월, 최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광고' 사업자를 규제 대상 사업자로 추가	- 시장 지배력 지위와 남용에 대한 기준을 확정 - 플랫폼의 가격 담합, 독점거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한 강제매매, 알고리즘 활용한 경쟁저해행위 금지 명시 -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 위반법으로 알리바바, 텐센트에 과징금 부과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이에 따라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사전적으로 대형플랫폼 및 금지행위를 지정하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거나 논의 중
 - EU는 '22년 초대형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사전규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을 발효, 미국은 반독점개혁법안을 상정했으나 미통과로 폐기

■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 중

-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의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4대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플랫폼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공정거래법에서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사후적 판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으로 사전에 지배적사업자 및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취지¹⁾
- 플랫폼경쟁촉진법은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미국 재계까지 반대하면서 2월 예정된 법안공개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공정위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거래 질서를 조성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입법 추진 의지를 피력 중

■ 금융플랫폼은 독과점 이슈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나타날 수 있음

- 플랫폼은 규제방식과 강도가 금융회사와 상이하여 동일 기능 서비스임에도 동일한 소비자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

표2 | 플랫폼경쟁촉진법 주요 특징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	• 매출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 및 정성적 요건까지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금지행위 유형 법제화	•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사전에 규정, 금지 행위로 법제화 ① 멀티호핑 제한: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 플랫폼 이용을 방해 ② 최혜대우 요구: 자사 플랫폼상 거래조건을 타 경쟁자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③ 자사 우대: 자사 플랫폼상의 본인 상품을 경쟁사업자 보다 우대 ④ 끼워팔기: 플랫폼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1)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획정, 지배적 사업자 여부, 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 등 판단을 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

- 금융플랫폼은 정보제공, 권유, 중개 등의 구분이 어려워 플랫폼의 행위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금융플랫폼이 대형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안정성 이슈도 존재
 - 금융플랫폼은 금융회사에 비해 주어지는 규제 강도가 약해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보유
 - 특히 최근 급격하게페이충전금이 증가하나 플랫폼은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해서 일시적인 대규모 유출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플랫폼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경우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페이충전금이 외부예치규제가 없는 경우 그림자금융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고, 예치규제로페이충전금이 예금, 신탁 등 금융권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금융권과 연계성이 강화되어 빅테크의 실패로 대규모 인출 발생시 금융회사에 직접 영향
 - 플랫폼이 금융·비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제공서비스간 상호의존성이 나타나며,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판매 등)가 심화될수록 플랫폼의 실패가 금융부문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
- 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 이슈를 제외한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성 관련 국내외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표3 | 금융플랫폼 대형화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이슈

I 플랫폼의 독점적 성격	•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테크 플랫폼사가 주요 부문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 등극하면서 독점 문제가 발생 • 기존 경쟁정책의 유효성과 규제 집행에 대한 한계 인식하며 관련 규제 마련 필요성 논의	본보고서 분석대상
II 금융소비자	• 금융플랫폼과 금융회사의 상이한 규제로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으나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서비스냐에 따라 소비자 보호 수준이 다를 수 있음 • 플랫폼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상품 추천, 중개 등에 대한 책임소재 귀속 대상 논의	
III 금융안정성	• 플랫폼의 펀딩상품(선불충전금)의 지급불능 위기 등으로 인한 금융안정성 위협 • 플랫폼 내 금융/비금융 연계사업에서 발생하는 복합리스크가 금융안정성 위협 가능성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II. 국내외 주요국의 금융플랫폼 정책

1. 금융소비자 보호

- 미국, 일본 등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로 지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기능과 리스크가 유사한 금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업태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
 -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동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에도 기존 금융권과 동일 라이선스를 요구
 - 특히 일본은 현 규제체계로는 플랫폼 등 新비즈니스를 규율하기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업종별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기능별 체제체계로 전환하여 동일한 기능-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 금융플랫폼 중개에 대해 기존 금융권과 동일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하거나 통합 중개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여 플랫폼 중개에 대한 책임을 확대
 -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및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금융서비스 보호를 강화 중
 - 미국, 영국 등은 플랫폼이 금융상품 중개를 하려면 기존 금융업자와 동일하게 대출중개인, 보험브로커 등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하게 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

표4 | 각 국별 금융상품 중개라이선스

중개대상		미국	영국	일본		
예금		-Deposit Broker	NA	은행대리업	금융서비스 중개업	
대출		-Loan Broker	-모기지중개업자(MI)			
금융투자상품		[증권] -Register Representative -Financial Planner [파생상품] -Future Introducing Broker	-투자자문업자(FA)	금융상품 중개업		
보험		-Agent -Broker -Financial Planner	-일반보험중개업자(GI)	보험모집인		
비교플랫폼	대출	-Loan Broker 취득 요구	-중개업자 라이선스 요구	NA		
	보험	-모집 행위 (판매, 판매 권유, 교섭) 시 Broker 취득 요구 - 단순 사무시 불필요	- 보험중개인 등록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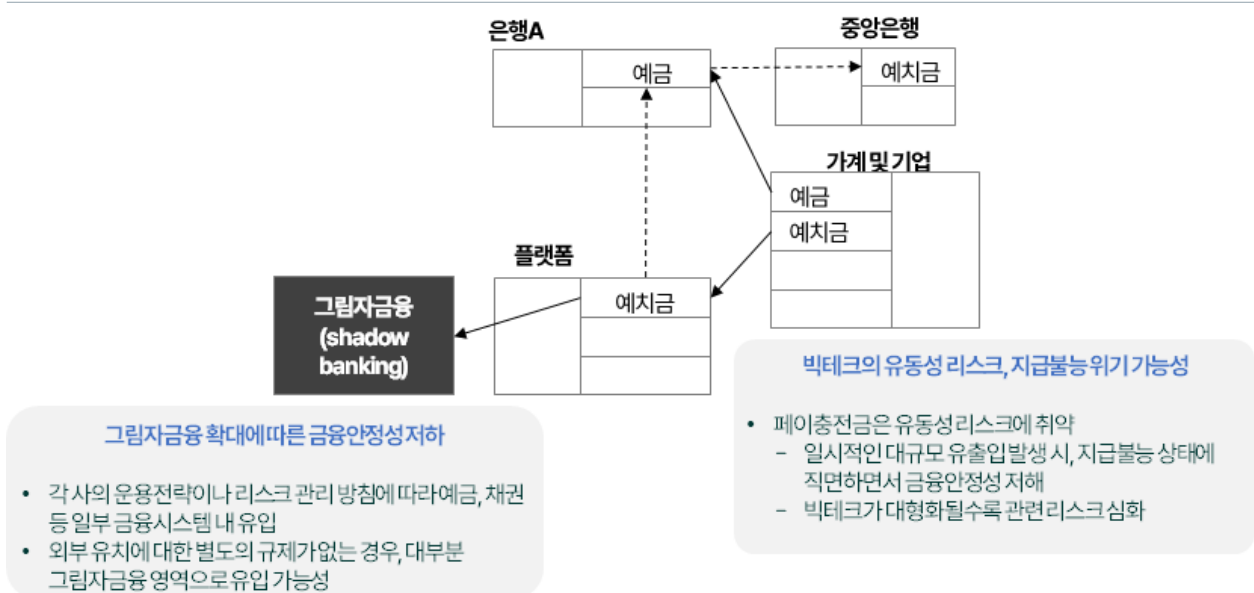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일본은 금융플랫폼 중개에 대해 첫 제도적 접근을 한 국가로, 2020년 모든 금융 분야의 금융상품 중개가 가능한 ‘금융상품서비스중개업’을 도입하고, 금융상품 중개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의무를 대폭 강화
 - 기존 체계에서는 금융상품 중개 시 예금은 은행대리업 허가, 보험상품과 유가증권은 각각 보험모집인과 금융상품중개업자로 각각 등록해야 하며, 1사 전속주의가 적용되어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된 형태
 - 기존 중개업자는 1사 전속주의로 제한되어 있어 중개업자의 고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중개업자와 계약한 금융회사의 책임져야 하나 금융상품서비스중개업자는 1사 전속주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에 대해 중개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
- 국내에서도 금융플랫폼 서비스 중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레이 영역이 존재
 - 금융플랫폼의 위상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금융플랫폼인 전자금융업자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2006년 제정된 이후 제도적인 큰 변화없이 유지
 - 디지털화에 맞춰 금융플랫폼의 법적 정의와 금융플랫폼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2020년 11월)은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
 -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업행위 규제, 플랫폼의 책임의무 부여, 과징금 제도 등을 도입
 - 또한 금융플랫폼인 전자금융업자는 법상 금융회사가 아니며, 제공 서비스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색지대
- 다만 최근 금융플랫폼의 비교추천은 ‘중개’로 해석하면서 금소법이 적용
 -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에서 수행하는 금융상품 비교·추천은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플랫폼이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요구
 -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할 경우 금융상품 비교·추천플랫폼도 금소법에 따라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되어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
 - 이로 인해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인 플랫폼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됨
 - 다만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중 대출, 카드를 제외한 예금, 펀드, 보험은 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움

2. 금융안정성

- 금융플랫폼의 편당상품(선불충전금)이 대형화되자 주요국은 금융안정성을 위해 규제 및 인프라를 도입
 -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플랫폼의 편당상품이 대형화되어 금융안정성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
 - 중국은 중앙은행에 예치 의무를 2017년 도입하여 처음에는 20%부터 시작하여 점차 예치 비중을 확대하면서 2019년 100% 전액 외부 예치 의무를 부여
 - 또한 1일 인출금액과 1인 예치금액 한도 설정함으로써 플랫폼의 편당상품이 지나치게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급불능 리스크를 최소화
 - 중국은 플랫폼 실패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플랫폼사의 결제·청산을 전담하는 왕롄(網聯, Nets Union)을 설립하여 플랫폼과 금융시스템이 직접 연결되는 것을 차단
 - 중국 플랫폼사들은 협력은행과 1:1로 청산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왕롄 출범 이후에는 플랫폼과 은행간 직접적인 연결을 차단하고 왕롄²⁾을 통해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함

그림1 | 플랫폼의 편당상품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료 : FSB

2) 왕롄은 2016년 4월부터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6월 설립·출범. 왕롄 출범 이후 플랫폼의 제3자 결제시스템이 일원화되고 금융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은행의 직접감독으로 금융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지급결제업자의 지급불능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

- 싱가포르의 지급결제를 담당하는 플랫폼사가 대형화될 경우 상위 라이선스 취득을 강제화함으로써 은행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
- 주요국은 금융·비금융 동시 수행으로 인한 복합리스크 관리를 위해 복합금융 그룹 규제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
 - 금융플랫폼은 대규모 사업과 다양한 금융·비금융 연계사업 확대로 발생하는 리스크가 시스템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음
 - 금산분리가 적용되는 미국 등을 제외한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복합금융그룹 규제를 도입하고 비금융그룹의 금융업 영위로 인한 리스크를 규율
 - 특히 금융플랫폼 규모가 커진 일본은 소니와 라쿠텐을 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하여 보다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 등을 적용, 금융리스크 뿐만 아니라 금융 및 비금융 동시 수행에 따른 복합리스크도 제어
 - 중국은 2020년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그룹은 산하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금융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
- 국내에서도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를 의무화했으나 전액이 아닌 50%만 적용
 - 국내에도 지급결제서비스 규모 확대로 플랫폼이 보유한 선불충전금 잔액이 대폭 증가하자 당국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외부예치를 의무화
 -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이용자자금보호 가이드라인)를 통해 외부 예치를 의무화, 2023년 8월 전금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24.9월 시행)

그림2 | 중국 왕렌 도입 이전 및 이후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

- 그러나 전금법상 외부예치 규제는 전액이 아닌 ‘50% 이상’으로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이용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
- 국내에도 금융복합그룹 규제가 선정기준이 금융플랫폼을 포괄하기에는 한계
 - 국내에도 2021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여 비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자본적정성 규제, 엄격한 내부거래 관리 등이 적용되어 비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
 - 2023년에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며 카카오, 토스, 네이버 등은 제외
 - 이는 선정기준이 전통적인 금융업에 기반하고, 자산규모로 설정되어 있어 금융 플랫폼들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선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음
 - 복합금융그룹 지정요건이 ① 여수신, 보험, 금투업 등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② 금융위 인허가 및 등록회사 1개 이상, ③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 ④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규정
 - 카카오나 토스는 주력업종인 은행의 자산총액은 크나 비주력 사업인 증권 규모가 작아 금융복합그룹 선정에서 제외, 네이버는 전자금융업종이어서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표5 | 2023년 지정 금융복합그룹

(조원, 개)				
그룹명	자산합계	주력업종 및 자산	비주력업종 및 자산	소속금융회사
삼성	451.3	보험(368.4)	여수신/금투(82.6)	37
한화	163.3	보험(147.3)	여수신/금투(14.1)	21
교보	130.6	보험(117.8)	금투(12.6)	11
미래에셋	127.9	금투(81.2)	여수신/보험(43.5)	120
현대차	83.7	여수신(74.2)	금투(9.4)	45
DB	73.2	보험(63.2)	여수신/금투(9.9)	16
다우키움	47.6	금투(39.7)	여수신(6.6)	40

주: 1) 자산합계는 국내 금융회사 기준, 2) 소속 금융회사 수는 해외 금융회사 포함

자료 : 금융위원회

III. 향후 금융플랫폼 정책 방향

1. 금융소비자보호 측면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전금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플랫폼도 금소법 적용대상에 편입할 필요
 - 국내에서도 금융플랫폼의 입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금융플랫폼의 법적 정의와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할 필요
 - 금융플랫폼(전자금융업자) 자체와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조 역할이 아니라 핵심역할을 수행하므로 금융플랫폼과 제공서비스를 각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할 필요
 - 예를 들어 전자금융업자는 전금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고 제공하는 페이서비스는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선불지급수단 등은 신용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 현재 예금, 보험 등 샌드박스로 운영되는 플랫폼 중개를 법제화하고 나아가 금융서비스 중개업 도입을 통해 플랫폼 중개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

표6 |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윤관석의원안)의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규제

금융플랫폼이란?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리, 중개, 주선, 광고, 정보제공, 비교분석, 추천 등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의 전자적 시스템	영업 행위 규제 적용	• (오인방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 연계 및 제휴 시 이를 통해 이용자가 명칭, 제조/판매/광고의 책임주체를 오인하지 않도록 할 것 • (인위적 개입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변경, 편향된 상품 노출 등의 개입행위 금지 • (자유선택 보장) 이용자는 희망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불이익 없이 중단 가능할 것 • (공정/정확성 확보) 신기술에 따른 의사결정은 불합리한 차별이 없고 설명가능해야 하며, 편향된 의사결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책임성 강화) 플랫폼의 AI,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 이용자의 설명, 질의, 이의 제기 등이 제약되지 않는 여건을 마련 할 것 <업종별 특성에 따른 개별적 영업행위 규제 도입> •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자자금 금지(자금이체, 대금결제업) • 가맹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주거적 점검(대금결제, 결제대행업) • 이용자 자금의 직접 보유 금지(자금지사전달업) 등
---	--------------------	---

자료 : 국회 의원정보시스템

-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의 예금·보험 중개의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제도화, 플랫폼 중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
 - 예금·보험 중개는 위탁금융회사를 통한 관리, 기존 판매중개업 규제(금소법·개별업권 규제),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新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샌드박스 운영상 요건에 불과
- 일본 사례처럼 자기 책임 하에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을 검토할 필요

■ 나아가 규율체계도 업권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하여 규제공백을 해소할 필요

- 국내 규제체계는 특정 업태·업종 중심인 업권별 규율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
- 기술 발달, 디지털 전환,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업권별 규율체계로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능 중심의 규제로 전환을 고려
- 금융 활동 중심의 수평적이고 기능적인 활동 기반 규제로 전환하여 동일 기능, 동일 위험에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금융업 참가자의 비즈니스 모델 및 기능과 위험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

표7 | 국내 상품별 대리중개업자

	직접 판매	1사 전속대리	복수사 대리	상품소개	중개업
대출성 상품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보험사, 증권사 등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업자	온라인 대출모집인	부동산 자동차 딜러 등	없음
예금성 상품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투자성 상품	투자매매업자, 보험사 등	투자권유인	은행 등 겸영투자업자	없음	투자중개업자
보험성 상품	보험사 등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법인대리점 은행 등 금융회사	없음	보험중개사

↓ 판매에 따른 책임 및 의무는 '수탁회사'에 부여

금융상품 중개업 도입 검토

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금융안정성 제고 측면

- **이용자자금 보호와 플랫폼의 지급불능리스크를 방지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 외부예치를 의무화**
 - 전금법 개정안은 외부에 전액이 아닌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여 일부 금액은 여전히 리스크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
 - 이용자 보호 및 플랫폼의 지급불능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선불충전금에 대한 외부 예치를 100% 의무화하되, 소형 금융플랫폼사에게는 단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 **은행 자금중개기능 약화로 금융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불충전금의 적립금 부여를 금지**
 - 8월에 개정된 전금법에 따르면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게 허용함
 - 그러나 예금과 유사한 선불충전금에 리워드가 제공될 경우 은행은 예금 확보를 위해 금리 경쟁이 불가피하고 결국 조달비용이 증가하게 됨
 - 조달비용 증가는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차주의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은행의 예금 규모가 감소하고 조달의 변동성이 커지면 결국 은행 대출여력이 감소하여 자금중개역할이 저하되면서 금융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은행이 충분한 예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신규대출 거절, 기존대출 연장 거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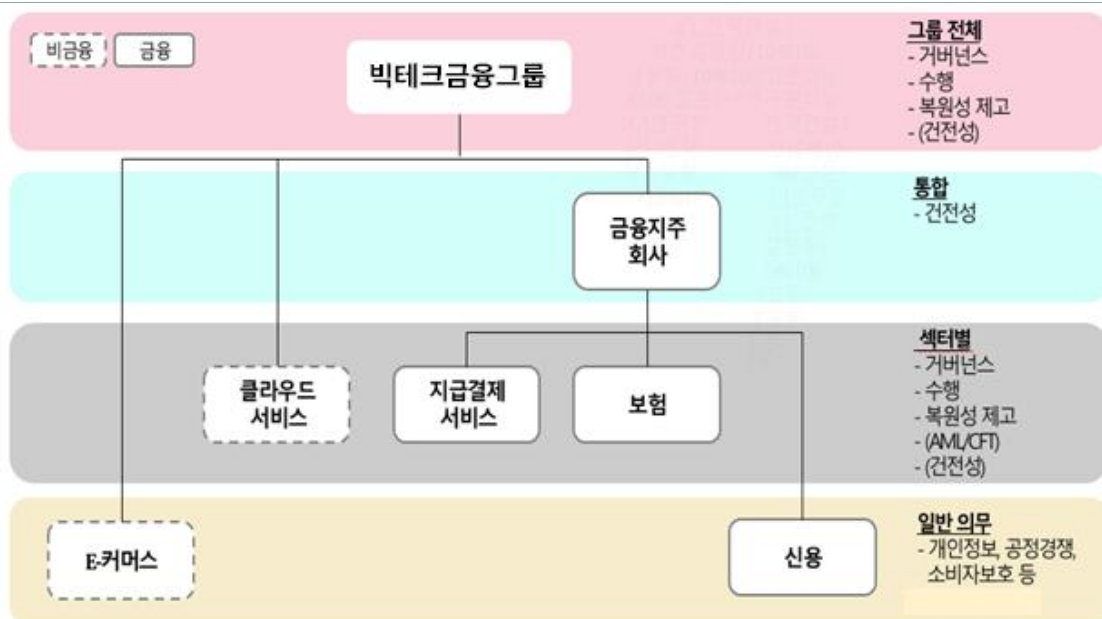
- **플랫폼의 시스템리스크 차단을 위해 복합금융그룹 선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
 - ‘5조원 이상의 금융업 2개 이상’이라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이 시스템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 5조원 이상 금융업이 1개더라도 복합금융기업집단에 선정되도록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
 - 금융자산총액이 30조원이 넘는 카카오와 토스는 은행업을 수행하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비주력업종(증권) 규모가 작아 복합금융기업집단에 미지정
 - 또한 복합금융그룹 선정기준을 현 시대에 맞게 재검토하여 가령 자산과 같은 stock 개념 뿐만 아니라 flow 개념도 추가하여 자산 기반 영업을 하지 않는 플랫폼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함

- 금융플랫폼은 주로 중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산규모에 반영되는 부분은 매우 작으므로 연간 결제액 혹은 중개 규모로 함께 고려해야 복합리스크 판단이 가능

■ 장기적으로는 플랫폼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검토

- 플랫폼 산하 자회사로 은행, 증권사가 있어 업종별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동 규제로는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하고 금융·비금융 활동의 상호리스크 발생 방지 한계로 그룹 차원의 규제의 보완이 필요함
- 가령 BIS에서 제안하고 있는 ‘플랫폼 그룹의 통합접근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볼 필요
 - BIS는 플랫폼업의 금융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 및 비금융을 포괄하는 규제체계를 모색해야 하며, 플랫폼 그룹 전체에 규제 의무를 부여하여 플랫폼 고유 비즈니스 모델에 내제된 상호의존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
 - BIS는 플랫폼의 새로운 규제체계로 플랫폼 하 금융활동은 금융지주회사(FHC) 설립하여 산하에 두게 하여 금융부분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금융 및 비금융 활동간 상호작용을 제한하지 않게 함

그림3 | BIS의 플랫폼그룹 새로운 규제 : 통합접근법



자료 : BIS, 예금보험공사

[참고문헌]

- 강동수 외(2023),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의 혁신과 개혁방안, KDI
금융위원회(2022),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2023),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김혜미 외(2020), 오픈뱅킹·빅테크·은행의 미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혜미(2021), 플랫폼사의 ‘사실상 중개행위’ 규율 필요성,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혜미(2022),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과 올바른 정책방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혜미(2024), 금융분야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법무부(2024), 해외규제모니터링 제1호: EU 디지털 서비스법
송태원(2018), 인터넷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와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법학회
이동익 외(2022), BIS 빅테크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 적용 필요성, 예금보험공사
이정진(2019), 중국 왕렌과 은롄에 대한 이해, KB경영연구소
최은진(2024),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Kotra 상하이무역관(2017), 온라인 결제시장에 변화 바람: 왕렌의 등장
- BIS(2019), Big Tech in finance : opportunities and risks
BIS(2022), Big Tech regulation in search of new framework
BIS(2022), Big Tech Interdependencies – a key policy blind spot
BIS(2023), Big Techs in finance
FCA(2020), Sector View
Lael Brainanrd(2020), The Digitalization of Payments and Currency: Some Issues for
Consideration
일본 금융청(2019), 결제법제 및 서비스중개법제에 관한 워킹그룹
-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